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서식] <개정 2019. 10. 7.>

관광종사원 []등록 []자격증재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3일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
	주소		

자격구분		합격일	
자 격 증 번호		취 득 연월일	
신청사유			

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[]관광종사원 등록 []관광종사원 자격증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한국관광공사사장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) 2매 2. 관광종사원 자격증(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관광종사원 등록 시: 5,000원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시: 3,000원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